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7호

「도로법」 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수도권 제2순환선(포천~화도) (고속국도 제400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8.71km)
기간	2024년 2월 7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포천화도고속도로(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124(☎ 1877-1140)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